규　　칙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의장 순천시의회의장인

2023년　5월　19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61호

붙임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순천시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을”을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를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

보”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임)”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한 이외의 위원회”를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로, “위원회 의결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
제2조(구성) 위원회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의회운영위원장---.
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순천시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임기)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를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 -------.
제7조(발언 및 변명) ①·② (생 략)	제7조(발언 및 변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 ---------- ---------- --.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통지) ---------- -- -- 통지---------- ---------- ----------. ---------- ---------- --------- 통지-------.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